

제 2 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이 회생계획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조사위원이 2023년 6월 9일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기준일(2023년 4월 13일) 현재 조사위원이 조사한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자산총계 128,104,810천원, 부채총계 95,954,637천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32,150,173천원만큼 초과하고 있으며, 계속기업가치는 68,814,237천원, 청산가치는 78,940,055천원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10,125,818천원만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사업계획상 아산공장을 매각한다는 가정을 하였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더라도 회생절차를 유지한다면 공장매각대금을 활용하여 회생채권 등에 대한 전액 변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채무자의 아산공장을 매각하거나 채무자를 현 수준에서 청산하기에는 다수의 종업원 및 채권자, 주주들에게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예상되는 바이기에 다수의 채권자 및 주주들의 권익에 조금이나마 부합하고자 채무자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삼정회계법인을 M&A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여 회생절차 인가전 M&A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와 M&A 매각주간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23년 7월 7일 공고 전 인수예정자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입찰서류를 토대로 (주)삼라마이다스를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주)삼라마이다스와 2023년 7월 14일 “회생회사 국일제지 주식회사 M&A에 관한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공개매각절차에는 다른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하질 않아 공고 전 인수예정자는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되었으며, 조건부 투자계약은 확정부 투자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위 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인가전 M&A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생계획을 제출함에 있어서 공동관리인 이하 전 임직원들은 이 회생계획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인내와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였으며, 경영의 합리화 및 수익 증대를 통하여 이 회생계획의 실행에 매진하여 기필코 채무자가 갱생함으로써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기대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오니 긍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랍니다.

제2절 변제할 채권액의 내역

채권 조사기간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 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되어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이 시인할 채권액을 합산하고, 이 회생계획 제출일 현재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하여 소멸된 채권액 등의 변동액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할 채권액

(1) 변제대상 채권액

조사기간에 시인된 채권액,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채권구분 | | | 조사기간 시인된 채권액 | | | | 변동액 |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 ^(*) |
|-----------|-----------|--------------------------|-----------------------|----------------------|-------|-----------------------|------------------------|-------------------------------|
| | | | 원금 | 개시전이자 | 개시후이자 | 합계 | | |
| 회생 담보권 | 대여금 채권 | 한국산업은행 | 19,591,207,593 | 91,712,383 | - | 19,682,919,976 | - | 19,682,919,976 |
| | | (주)하나은행 | 7,721,631,197 | 34,042,816 | - | 7,755,674,013 | (7,755,674,013) | - |
| | | (주)신한은행 | 5,816,409,949 | 4,466,842 | - | 5,820,876,791 | (1,044,560,013) | 4,776,316,778 |
| | | 에프에이치 2306 유동 화전문유한회사 | - | - | - | - | 7,755,674,013 | 7,755,674,013 |
| | 소계 | | 33,129,248,739 | 130,222,041 | - | 33,259,470,780 | (1,044,560,013) | 32,214,910,767 |
| 회생 채권 | 전환사채권 | | 20,500,000,000 | 2,660,855,609 | - | 23,160,855,609 | - | 23,160,855,609 |
| | 대여금채권 | | 2,387,726,676 | 9,904,672 | - | 2,397,631,348 | 4,114,224 | 2,401,745,572 |
| | 상거래채권 | | 5,334,984,585 | - | - | 5,334,984,585 | 493,370,927 | 5,828,355,512 |
| | 특수관계인채권 | | - | - | - | - | 1,062,382,877 | 1,062,382,877 |
| | 미발생구상채권 | | 19,389,179,237 | - | - | 19,389,179,237 | (39,600,000) | 19,349,579,237 |
| | 구상채권 | | - | - | - | - | 39,600,000 | 39,600,000 |
| | 소계 | | 47,611,890,498 | 2,670,760,281 | - | 50,282,650,779 | 1,559,868,028 | 51,842,518,807 |
| 조세 등 채권 | | | 201,016,140 | 8,801,400 | - | 209,817,540 | (163,592,950) | 46,224,590 |
| 합계 | | | 80,942,155,377 | 2,809,783,722 | - | 83,751,939,099 | 351,715,065 | 84,103,654,164 |

(*) 상기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은 출자전환 등 권리변경 이전 금액이며, 조세 등 채권의 개시전이자 및 개시후이자는 각각 가산금과 증가산금을 의미함

2. 주요 변동내역

가. 회생담보권

(1)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

채권 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3건에 신고금액은 6,835,244,324원으로 관리인이 특별 조사기일에 전액 부인할 예정이며, 그 내역은 [별첨2-1] 및 [별첨2-2]와 같습니다.

(2) 소멸된 회생담보권

채권 신고기간 이후 소멸된 회생담보권은 2건에 1,044,560,013원으로, 그 내역은 [별첨2-3]과 같습니다.

(3)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

채권 신고기간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은 1건에 7,755,674,013원으로, 그 내역은 [별첨2-4]와 같습니다.

나. 회생채권

(1)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채권 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5건에 신고금액은 344,808,132원으로 관리인이 특별 조사기일에 시인할 예정인 회생채권은 9,762,600원이며, 그 내역은 [별첨2-1] 및 [별첨2-5]와 같습니다.

(2) 이의철회된 회생채권

채권 신고기간 이후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27건에 1,589,853,804원으로, 그 내역은 [별첨2-6]과 같습니다.

(3) 소멸된 회생채권

채권 신고기간 이후 소멸된 회생채권은 2건에 39,748,376원으로, 그 내역은 [별첨2-7]과 같습니다.

(4) 명의변경된 회생채권

채권 신고기간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1건에 2,585,000원으로, 그 내역은 [별첨2-8]과 같습니다.

(5) 미발생구상채권이 권리변경된 회생채권

채권 신고기간 이후 미발생구상채권에서 구상채권으로 권리변경된 회생채권은 1건에 39,600,000원으로, 그 내역은 [별첨2-9]와 같습니다.

다. 조세 등 채권

(1)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

채권 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1건에 신고금액은 24,980,590원이며, 그 내역은 [별첨2-1], [별첨2-10]과 같습니다.

(2) 소멸된 조세 등 채권

채권 신고기간 이후 변제하여 소멸된 조세 등 채권은 1건에 184,831,980원이며, 그 내역은 [별첨2-11]과 같습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건 및 회생을 전제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변제자원,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자원

(단위: 원)

| 구분 | | 금액 | 비고 |
|------------------|--------------|------------------------|--------|
| 인수대금 | 유상증자 | 100,500,000,000 | |
| | 소계(A) | 100,500,000,000 | |
| 차감항목 | M&A 주간사 수수료 | 1,094,610,000 | VAT 포함 |
| | 관리인 특별보수 | 230,250,000 | |
| | 소계(B) | 1,324,860,000 | |
| 변제자원(A-B) | | 99,175,140,000 | |

2.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이익 도모와 채무자의 회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채권구분 | |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 | 권리변경 (출자전환) |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 | | | |
|-----------|-----------------------|--------------------------|------------------------|-----------------------|----------------------|-----------------------|-----------------------|----------------|
| | | | | 원금 | 개시전이자 | 개시후이자 | 합계 | |
| 회생 담보권 | 대여금 채권 | 한국산업은행 | 19,682,919,976 | - | 19,591,207,593 | 91,712,383 | 1,278,662,243 | 20,961,582,219 |
| | | (주)하나은행 | - | - | - | - | - | - |
| | | (주)신한은행 | 4,776,316,778 | - | 4,771,849,936 | 4,466,842 | 298,031,186 | 5,074,347,964 |
| | | 에프에이치 2306 유동화 전문유한회사 | 7,755,674,013 | - | 7,721,631,197 | 34,042,816 | 386,593,810 | 8,142,267,823 |
| | 소계 | 32,214,910,767 | - | 32,084,688,726 | 130,222,041 | 1,963,287,239 | 34,178,198,006 | |
| 회생 채권 | 전환사채권 | 23,160,855,609 | - | 20,500,000,000 | 2,660,855,609 | 1,802,604,838 | 24,963,460,447 | |
| | 대여금채권 | 2,401,745,572 | - | 2,391,840,900 | 9,904,672 | 168,779,404 | 2,570,524,976 | |
| | 상거래채권 | 5,828,355,512 | - | 5,828,355,512 | - | - | 5,828,355,512 | |
| | 특수관계인채권 | 1,062,382,877 | (1,025,487,337) | 36,895,540 | - | - | 36,895,540 | |
| | 미발생구상채권 | 19,349,579,237 | - | - | - | - | - | |
| | 구상채권 | 39,600,000 | - | 39,600,000 | - | - | 39,600,000 | |
| | 소계 | 51,842,518,807 | (1,025,487,337) | 28,796,691,952 | 2,670,760,281 | 1,971,384,242 | 33,438,836,475 | |
| 조세 등 채권 | 46,224,590 | - | 45,910,620 | 291,570 | 22,400 | 46,224,590 | | |
| 합계 | 84,103,654,164 | (1,025,487,337) | 60,927,291,298 | 2,801,273,892 | 3,934,693,881 | 67,663,259,071 | | |

3.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가.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변제 기일에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1) 한국산업은행

원금에 대하여 신고번호 담보권1-1, 담보권1-2에 대해서는 연 9.20%, 담보권1-3에 대해서는 연 9.00%, 담보권1-4에 대해서는 연 6.00%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신한은행

원금에 대하여 연 8.00%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3) 에프에이치23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원금에 대하여 신고번호 명의변경2-1에 대해서는 연 8.97%, 명의변경2-2에 대해서는 연 4.40%, 명의변경2-3에 대해서는 연 8.69%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4.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전환사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1) IBK금융그룹시너지아이비 사업재편 신기술투자조합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14.00%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시너지아이비 소부장 1호 신기술투자조합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14.00%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3)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신고번호 채권8-1에 대해서는 연 14.00%, 채권8-2에 대해서는 연 5.00%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4) 기타 전환사채권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5.00%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3) 전환사채 전환권의 권리변경

전환사채 전환권 중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전일까지 행사되지 않았거나, 청구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전환권은 회생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모두 소멸합니다.

나. 회생채권(대여금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변제 기일에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1) 중소기업은행

원금에 대하여 목록번호 채권1-1~1-2에 대해서는 연 9.00%, 채권1-3에 대해서는 연 14.60%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기타 대여금채권자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다. 회생채권(상거래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변제 기일에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라.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1) 최우식

원금 및 개시전이자 100%를 출자전환 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 8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기타 특수관계인채권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마.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1) 대위변제금

보증기관 등이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은 대위변제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의 최초 영업일)에 100%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바. 회생채권(구상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5.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구 법상의 가산금과 증가산금 해당부분)를 포함한 금액을 100%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6.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가.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 등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나. 위 가.항에 따라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나 확정소송에 의하는 채권 이외에 미확정채권이 회

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항, 나.항에 따라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합니다.

7.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가. 주주의 권리제한

- (1) 이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 (2) 이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3) 본 장에 의한 자본감소 및 신주발행(인수자에 의한 유상증자 포함)은 국내의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발행 및 유통 유관기관의 절차에 따릅니다.

나.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1) 기존주주의 자본감소

- 1) 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127,617,473주 중 지배주주 최우식의 주식 7,262,576주에 대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4항에 의거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량 무상소각 합니다.
- 2) 자본 감소되는 주권의 소지자는 이 회생계획 인가일의 익영업일까지 해당 주권을 회사의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이 회생계획 제8장 제2절에 의한 기존주주의 자본감소의 효력은 이 회생계획 인가일의 익영업일에 발생합니다.

(2)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 1) 이 회생계획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의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1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 100원으로 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 합니다.
- 2)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은 위 (1) 항에 따른 기존주주의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의 익영업일에 발생하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주를 발행합니다.

(3) 출자전환 주식의 주식재병합

- 1)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100원의 보통주 5주를 1주로 재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 2) 출자전환 주식의 주식재병합에 따른 자본 감소의 효력은 위 (2)항에 따른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효력발생일로부터 7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4)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발행

다음과 같이 채무자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한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인수인을 이를 인수합니다.

-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1,005,000,000주
- 1주의 액면금액: 금 일백원(₩100)
- 1주당 발행가액: 금 일백원(₩100)
- 증가할 자본금의 금액: 금 일천오억원(₩100,500,000,000)
- 신주를 인수할 자: (주)삼라마이다스
- 신주 인수대금의 납입기일: 이 회생계획 제8장 제4절에 의한 출자전환 주식의 주식재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 신주 인수대금의 납입장소: 관리인이 지정한 채무자 명의의 금융기관의 계좌(확정부 투자계약서 제8조에 따라 최종인수대금으로 예치된 금액이 신주인수대금의 납입기일에 신주 인수대금으로 전환되어 납입된 것으로 함)
- 신주의 효력발생일: 신주 인수대금 납입기일의 익영업일
- 보호예수: 채무자의 주식은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자는 인수주식의 100%를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하여야 합니다.

(5) 기존주주의 자본감소, 출자전환 주식의 주식재병합, 유상증자 후 주식수 및 자본금 내역

(단위: 주, 백만원)

| 구분 | 주주명 | 출자전환주식 주식재병합 후 | | 유상증자 후 | | |
|------|-------------------------------------|-------------------|-----|-----------|-----|-------|
| | | 주식수 | 자본금 | 주식수 | 자본금 | 지분율 |
| 기존주주 | 최우식 | - | - | - | - | 0.00% |
| | J.P.MORGAN SECURITIES PLC | 3,204,686 | 320 | 3,204,686 | 320 | 0.28% |
| | BARCLAYS CAPITAL SECURITIES LIMITED | 1,441,301 | 144 | 1,441,301 | 144 | 0.13% |
| | UBS AG | 758,921 | 76 | 758,921 | 76 | 0.07% |
| | 임진욱 | 620,000 | 62 | 620,000 | 62 | 0.06% |

| 구분 | 주주명 | 출자전환주식 주식재병합 후 | | 유상증자 후 | | |
|-------------|--|--------------------|---------------|----------------------|----------------|----------------|
| | | 주식수 | 자본금 | 주식수 | 자본금 | 지분율 |
| | 김동수 | 568,888 | 57 | 568,888 | 57 | 0.05% |
| | MORGAN STANLEY AND CO INTERNATIONAL PLC | 559,385 | 56 | 559,385 | 56 | 0.05% |
| | 조규상 | 403,158 | 40 | 403,158 | 40 | 0.04% |
| | 임상옥 | 400,475 | 40 | 400,475 | 40 | 0.04% |
| | 박문서 | 378,100 | 38 | 378,100 | 38 | 0.03% |
| | VANGUARD TOTAL INTERNATIONAL STOCK INDEX | 355,567 | 36 | 355,567 | 36 | 0.03% |
| | 문은식 | 346,680 | 35 | 346,680 | 35 | 0.03% |
| | 김기완 | 306,810 | 31 | 306,810 | 31 | 0.03% |
| | CITADEL SECURITIES KOREA PTE. LIMITED | 298,361 | 30 | 298,361 | 30 | 0.03% |
| | 홍순도 | 250,004 | 25 | 250,004 | 25 | 0.02% |
| | GOLDMAN SACHS INTERNATIONAL | 232,492 | 23 | 232,492 | 23 | 0.02% |
| | 배용복 | 228,708 | 23 | 228,708 | 23 | 0.02% |
| | VANGUARD DEVELOPED MARKETS INDEX FUND | 225,789 | 23 | 225,789 | 23 | 0.02% |
| | 증권금융(유통) | 224,345 | 22 | 224,345 | 22 | 0.02% |
| | 기타 기존주주 | 109,551,227 | 10,955 | 109,551,227 | 10,955 | 9.72% |
| | 기존주주 소계 | 120,354,897 | 12,035 | 120,354,897 | 12,035 | 10.68% |
| 회생채권 | 특수관계인채권(전 대표이사) | 2,050,974 | 205 | 2,050,974 | 205 | 0.18% |
| | 회생채권 소계 | 2,050,974 | 205 | 2,050,974 | 205 | 0.18% |
| 신주인수 | ㈜삼라미다스 | - | - | 1,005,000,000 | 100,500 | 89.14% |
| | 신주인수 소계 | - | - | 1,005,000,000 | 100,500 | 89.14% |
| | 합계 | 122,405,871 | 12,241 | 1,127,405,871 | 112,741 | 100.00% |